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1139 법인소득지방세 환급의 청구
원 고	회생법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8. 10.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보안카메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

1) 원고의 2018. 8. 7.자 준비서면과을 제3호증의 2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인이고, 원고는 A의 관리인이다.

나. A는 2016. 3. 31. 북대전세무서에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 978,593,020원, 산출세액 175,718,604원이나 산출세액 전액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고, 2017. 3. 31.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 결손금 -568,734,595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하지 않았다.

다. A는 2016. 4. 30. [redacted]구청장에게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17,571,860원을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140원을 차감하고 17,571,720원을 신고한 후 2017. 5. 2. 이를 납부하였고, 2017. 4. 24.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결손금 -2,271,459,445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17,571,860원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A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액을 환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2015년 귀속법인지방소득세 17,571,86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9.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A는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기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가 없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소급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1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시적 사업의 어려움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세액을 소급 공제하여 환급해 주기 위한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으로 중소기업인 납세자에 대해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위 지방세법 법문에 의하여,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이므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환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세가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고영식

판사 함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법인세법」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0

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